

사법감시

Justice Watch Newsletter

격월간 「사법감시」 / 제8호 / 1997년 3월 / 등록일: 1996년 2월 23일 / 등록번호아-2428 / 발행인:김중배

목 차

초점

한보사태의 부정부패와 검찰수사 2

특집

시민헌법재판 지상중계 4

- 변론요지/참고인진술/신문사향/결정요지

참여연대 대안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요구 14

사법개혁 과제

21세기를 향한 사법개혁 50대 과제 15

소송비용 중 감정료에 대하여 19

판결읽기

작은 권리의 주장은 사회를 변화시킨다 21

사법통계청

법청과대는 법 위에 있다? 22

지상중계

영장실질심사제, 선진사법으로 가는 촉매이다 24

Cyber-Law

Blue Ribbon Campaign - 표현의 자유 보장운동 28

나의 사법파해사례

꺾어진 짧은 인생과 15년의 억울한 옥살이 29

단평

인사가 검사를 망친다 13

이제라도 불법구금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14

어떻게 해서는 버스비리 없어지지 않는다 23

민주화에 역행한 경력이 문제다 30

부 록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35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 40

시민헌법시민헌법재판 지상중계



지난 1월 30일 노동관계법·안기부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모의 헌법재판이 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시민헌법재판에서는 합

헌과 위헌을 주장하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변론요지와 참고인진술, 신문사향, 결정문 등을 요약해 싣는다.

사법개혁과제

신설된 난, 21세기를 향한 사법개혁의 과제로 50가지를 선정하여 펼쳐놓는다. 그 첫번째로 감정료와 관련된 개혁과제를 싣었다. 과제선정 과정에서의 고민을 행간에서 읽어보기 바란다.

꺾어진 짧은 인생과 15년의 억울한 옥살이

2월 1일 15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 후 짧은 인생을 마감한 김 환씨의 유서 전문을 싣었다. 고인이 남긴 절제된 글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깊은 아픔을 읽을 수 있다.

영장실심사제, 선진사법으로 가는 촉매이다.



2월 17일 열린 인신구속제도개선에 대한 평가토론회 소개. 영장실질심사제의 정착을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을 점검해 본다.

부록 - 신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서

15일과 16일 송진훈 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었고 이영모 헌법재판관이 태통령에 의해 선출되었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발표하였다. 평가과정에 대한 소개와 평가서 전문을 싣는다.

한보사태의 부정부패와 검찰수사

심재우 (고려대 법대 교수 · 본지 편집자문위원)

우리 나라는 지금 한보사태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 나라가 뒤흔들리고 있다. 건국 이래의 “최대스캔들”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의 정치적 의미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국가의 도덕성의 추락이다. 국가가 도덕성을 상실하면 마피아 집단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게 된다. 국가는 “강제단체”이긴 하지만 “강도단체”는 아니다.

孔子は 論語에서 “政者正也”라고 말하였다. 정치라는 것은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며, 바르지 아니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아니 하여도 백성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명령하여도 백성은 따르지 아니한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이번 한보사태의 본질은 위정자가 부정을 행하였다는 데 있다. 다시는 사람이 부정을 행하면서 어찌 백성에게 바르게 행할 것을 명령하며, 또한 그를 믿고 백성이 따라줄 것을 바라겠는가? 위정자의 부정부패의 부정적 효과는 단지 부패한 관리나 정치인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불신과 실종을 가져온다는 데 있다. 즉, 治道의 근본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데 있다.

위정자의 정치부정이 백성의 정치불신으로 이어지면 정치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점을 공자는 “足食, 足兵, 民信之矣”라는 유명한 말로써 표현하고 있다. 즉, 子貢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정치란 백성의 민생을 안정시켜 주어야 하고,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고, 국민이 위정자를 믿게 하여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자공이 다시 묻기를, “부득이하여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이에 답하되, “兵을 먼저 버려야 한다.” 자공이 다시 묻기를, “부득이하여

나머지 두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이에 답하되, “食을 버려라. 자고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듯이 백성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정치란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오늘날의 정치현실은 이 세 가지를 다 잃고 있는 것 같다. 경제도 엉망이고(食不足), 안보도 허점투성이고(兵不足), 백성의 정치불신(民無信)은 극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자의 정치철학에서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것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食과 兵이 죽하지 못하여도 정치는 존재할 수 있지만, 믿이 없으면 정치 자체가 실종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에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불신과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켰으며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다. 정부가 “성역 없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오히려 그 반대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을 은폐하는 듯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정을 적발하여 바르지 아니한 것을 바로잡아야 할 직무상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검찰 자체의 부정비리”에 다름아니다.

우선, 검찰은 왜 “깃털”만 잡아내고 “몸체”는 비켜가는가? 이른바 “설”과 “소문”만으로는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종일관된 입장이었으나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의 불신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면 검찰은 우선 그 의혹부터 풀어주어야 했었다. 그 “설”과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수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철저한 수사”가 아니었다.

둘째로, 검찰은 깃털급에 대한 32억원의 로비로 5조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사건을 한보비리의 실상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것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검찰은 상식이 벗어나는 수사결과를 가지고 상식 있는 국민들에게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하려 하는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수사"는 국민들의 눈에는 "성역 있는 수사"와 "왜곡된 수사"로 비춰지고 있으니 검찰에 대한 불신은 배신으로 변하여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셋째로, 검찰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한보는 총 5조 5백 59억원을 대출받아 그 가운데서 2천 1백 36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32억원으로 밝혀진 정·관계 로비를 비롯하여, 계열사 신설 및 인수, 계열사임직원 영업활동지원비, 해외진출경비, 정씨 일가의 전환사채 인수, 정씨 일가의 세금납부, 부동산구입, 전처 이혼위자료 등으로 유용하고, 250억원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아마도 그 250억원은 밝혀지지 않은 정·관계 로비 자금 및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 동안 검찰조사에서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서 거명된 정치인은 5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수사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중 5명만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자금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른바 "떡값"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쥐어 주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부작위는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떡값인지 뇌물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조사도 안해 보고 "몸체"는 없다고 하고, 조사도 안해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 식의 수사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조사도 안해 보고 범죄사실이 있다 없다고

단정할진대 도대체 검찰의 수사는 무엇을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부정을 척결하는 검찰도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 수사를 안해야 할 것을 조작하여 수사를 하는 적극적인 부정과 수사를 해야 할 것을 기피하여 수사를 안하는 소극적인 부정이다. 뒤의 것은 부정은폐로서 사후방조법과 같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찰부정"이란 말은 참으로 역설적인 형용의 모순이다.

이제 검찰에 기대할 것은 없다. 국민들의 허탈감은 너무나 크다. 그것이 과거의 군사정권의 검찰이 아닌 문민정부의 검찰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무엇이 무서워 아직도 몸을 사리는가. 언제가서 권력의 시녀로서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돌아올 것인가. 이번 한보사건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같은 사기횡령극에 권력이 농락당한 창피하고도 추잡한 비리스캔들이다. 그것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맹세한 문민정부에 의하여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망은 더 크며 아이러니컬하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증인선정과 조사 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는 공소권을 가진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부정척결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남아 있는 가능성은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뿐일 것이다. 이것도 정쟁으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면, 정치의 도덕성 회복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政者正也"라는 공자의 명제는 "政者不正也"라는 모순명제로 뒤틀려진 채 정치 아닌 정치의 부도덕한 악덕이 남아 있을 뿐이다. 사법감시단체의 이름으로 정치인의 각성과 책임을 추궁하는 바이다. 

이제 격월간 「사법감시」를 통신에서 만나십시오.

이제 격월간 「사법감시」를 통신에서 만나십시오.
참여연대가 컴퓨터통신 나무누리에 방을 개설했습니다.
참여연대 전체의 소식을 신속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격월간 「사법감시」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나무누리에 접속하셔서 Go PSPD라고 치시면
참여연대 방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사법감시」는 32번 정기강행물실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참여연대를 통해 나무누리에 가입하시면
가입비가 면제됩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이설훈(전화 02-796-8364)

시민헌법재판 지상중계

97년 1월 30일 노동관계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의 주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직접민주정치의 이상을 현실화시킨 의회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시민헌법재판은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중대사에 직접 참여하는 본래적 의미의 민주주의정신을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지면관계상 5시간이 넘도록 넘도록 위헌과 합헌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 시민헌법재판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상세한 내용은 「시민헌법재판」(증보판)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집이 필요한 독자에게는 송로 부담하에 제공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재판관

유현석 (변호사)
이효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임재경 (언론인)
허영 (연세대 법학과 교수)

변호인

청구인측 박성호 (변호사)
김선수 (변호사)
피청구인측 조상희 (변호사)
안영도 (변호사)

참고인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우 (경원대 법학과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유선호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시민헌법재판의 재판관들. 왼쪽부터 허영,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님

변론요지

청구인들의 대리인 박성호 변호사

날치기 된 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밝혀져야만 청구인들의 행위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 혹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국회통과절차에 있어서는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및 입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49조, 제50조 등을 위반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명확하며, 국회의 입법에 대한 위헌심판에 있어서 현재는 입법내용에 대한 실질적 요소의 심사뿐 아니라 입법의 형식적 요소의 심사가 지도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아무리 자율권을 내세우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므로 국회자율권의 하나인 의사규칙도 헌법을 위반할 수 없어 그 준수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재량도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국회가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회의 입법절차 준수 여부는 통치행위의 개념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청구인들의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

안기부법 개정법률은 국가보안법상 제7조와 제10조에 대한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서 벗어나며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이에 근거조항이 위헌인 안기부법 개정법률 역시 위헌이다.

노동관계법 개정법률은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전면 부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일반 근로자와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또한 위헌이다. 또한 직무의 성질에 따른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복수노조인정 유예조항의 경우에는 근로자 단결권의 핵심인 '단결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국제노동기구의 개정권고사항이다.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노동3권 행사시 필요한 도움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여 필요최소한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입장표현에 대한 제한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직권중재조항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중재에 회부하고 쟁의행위를 금지시킨 상태에서 중재제정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중재제정에 대해 재심과 행정소송의 방법으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어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된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노조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재벌과는 달리 노조의 정치활동은 철저히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노동부장관의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권 및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권규정,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규정,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금지규정, 쟁의기간중의 대체근로의 무제한 인정,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인정 기간

의 단축,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규정 등과 생산이나 주요업무 관련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에 있어 노조의 대표성 제한규정,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의 연장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규정등도 단체행동권의 심각한 제한등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정리해고제는 해고사유의 확대와 해고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권, 인간다운 생활권,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1일 최장근로시간제한없이 임금인하만을 가져오는 변형근로시간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퇴직금중 간정산제를 도입하여 노후보장적 의미를 갖는 퇴직금제도와 퇴직금누진제를 무의미하게 하였고, 휴업급여를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금을 축소시키고, 연차유급휴가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휴가를 축소시켰고, 연월차 휴가의 대체를 인정하였다.

합헌을 주장하는 이해관계인들의 대리인 조상희 변호사의 변론 요지



피청구인측의 논리를 날카롭게 주장한 조상희 변호사(오른쪽)과 안영도 변호사

공권력 행사가 입법작용인 경우 헌법소원의 요건중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또는 법

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참관기

시민들에 의한 위헌결정

박진석 (서울대 법학과 4년)

지난해 말의 국회날치기 압법에 대한 시민헌법모의재판은 사실 처음엔 나에게 별다른 감흥을 느끼게 하지는 못했다. 날치기와 개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별다른 구속력도 없는 시민헌법모의재판이라는 것은 그저 통과 의례적인(?)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나에게 던져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정에 들어서면 내손에 주어진 팜플렛은 그러한 안이한 발상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했다. 변호사님들의 변론요지와 참고인으로 나선 선생님들의 반대하면서도 전문적인 진술요지는 그간 내가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몰이해에 기초한 즉자적인 반발심리만을 길러왔었던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였다.

변론과 참고인 진술 등이 펼쳐진 지 5시간만에 기다리던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물론 위헌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결정문에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여부와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만, 문제가 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위헌결정까지의 고민과정이 대부분 생략된 점이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절차민주주의 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 제기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재판부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법의 내용에 대한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로서의 대국민 언론플레이어를 적절히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고민이 생략된 것은 참고인 진술에서 충분히 악법으로서의 면모를 선전(?)하였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과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법률은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실체상 내용상으로도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 법의 시행으로 피해를 보게될 자들은 다름 아닌 이땅에 발을 붙인 모든 노동자요,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민주 시민, 바로 우리들기 때문이다.

어찌됐건 이번 헌법모의재판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과정을 살피면서 그것이 얼마나 지금껏 우리가 의도적이건 아니건 '문민'의 환상속에서 이땅 민주주의 척박한 현실을 외면한 행위였던가를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국가의 위기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현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된 것이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처럼 국민의 지혜에 비탄하여 올바르게 내려지길 바라며, 오늘 여기서의 모의재판이 '모의'가 아니길 바란다.

국가안전기획부에게 이미 헌재에 의해 적용지침이 내려진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에 관한 수사권을 주었다는 개정 규정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 침해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며, 헌법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법률 개정 자체가 청구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든지 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노동관계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법률들로서 이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현재 가처분사건과 영장청구사건은 이른바 관련된 사건의 본안을 다투는 내용의 것이 아닌 신속성을 중요시하는 성질의 것으로서 만일 이 두사건에 제청법원이 의심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제청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여야만 신속성을 요하는 두 사건이 빠른 결론이 나서 이어지는 본안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더 확실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전통적인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의 자율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관해서는 국회의장 상대의 권한쟁의심판사건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문제된 법률의 개정에 관해 국회본회의개의시간, 의사일정의 통지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단순한 국회법 위반으로서 국회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법등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는 국회 내부에서 새로운 절차를 밟는 협의를 하든지 징계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3권분립의 원칙상 사법심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개정 법률의 실제적 내용에 대하여 안기부법 개정법률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현재의 적용지침이 있는 이상, 이 법률은 아무런 기본권 침해가 없다. 또한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정례회고제 등은 선진국에서 모두 제도화되어 있거나 판례로서 인정되어 있는 것이며 변형근로시간제는 최장근로시간의 제한, 임금감소에 대비한 사전 사후절차가 완비되어 있어 위헌의 소지는 없다. 교원 및 공무원의 단결권 보인조항은 이미 현재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위헌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며 복수노조인정의 유예는 제도변경으로 인

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3자 개입금지규정이 삭제되어 위헌의 소지가 없다. 또한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금지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규정도 기본적으로 정책상의 문제이지 헌법상의 기본권 문제는 아니다.

참고인 진술 및 신문

1.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주의의 정치이론을 통하여 본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

민주적 절차의 준수여부는 하나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치학의 민주

주의의 이론에서는 보통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두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 두측면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며, 정치학에서는 보통 절차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으로서 설정한다. 따라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날치기 통과는 청와대라는 의회외적 결정구조의 일방적 지휘에 의해 수행되어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인 3권분립체제를 크게 손상시켰다. 의회가 통법부의 역할만 한다면 그것은 과거 권위주의시절의 의사결정구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도 그 원칙 자체가 민주주의를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해야한다. 더구나 본사건에서는 i) 소수의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노력이 결여되었고 ii) 현재 정부여당의 다수에는 하자가 있으며 iii) 무엇보다 야당에게 의사표결의 일정과 과정을 알리지 않고 다수결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것이다. 그것은 다수결을 말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학적으로 의회내에서 의사결정과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여당의원들은 날치기통과에 거수기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행위이며 비민주적이다.

2. 이승우 (경원대 법학과 교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날치기통과의 위헌성

노동관계법, 안기부법이 위헌으로 판단되면 이 법률들의 국회통과절차는 헌법질서를 근본에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에 신한국당

과 그의 당총재에 대한 저항권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어 집회 및 시위와 쟁의행위를 합법화시킬 수 있게 되어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물론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 절차상의 하자 또한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그에 근거한 평등권을 침해하며, 국민주권의 이념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의 내용은 노동3권등을 제한, 침해하고 있고, 안기부법의 내용은 노동운동의 위축과 인신의 자유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들이다. 절차상의 하자는 법률집행을 매개하지 않고서도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내용상의 대체근로제도 집행을 매개하지 않고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여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고, 신청인들은 위 법률들의 직접적용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현재 사실상 존재하는 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보는 점에서 현재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으며, 두 법률들의 국회통과절차는 국회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자율권 내지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규정은 국회의 입법절차에서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근본적 규정이며, 국회에서의 명백한 입법절차의 위반은 무효인 공권력 행사이다. 또한 헌법은 제8조 제1항의 복수정당제는 소수자보호를 위한 제도로 오늘날은 권력분립적에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의 날치기 통과절차는 복수정당제, 권력분립, 민주주의원리, 국민주권원리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문제는 위 법률들이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됨으

로 단순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헌법상의 적법절차규정과 복수정당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함으로 인하여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단순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가 아니고, 처음부터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국회의 다수당과 행정부를 상대로한 헌법 제21조에 근거한 무효화투쟁이요 정치투쟁이다. 이처럼 본사안은 헌법상 근본이념이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고, 침해의 목적 내지 기도에 해당하는 헌법에 대한 적대감도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 또한 저항권을 '비판적 복종자세'라는 현재적의미로 해석할 때 침해행위에 대한 다른 구제방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춘 것이 된다.

3. 유선호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변호사)



실제로 민주주의를 운영한 경험이 일천하고 군사독재 하에서 길들여진 획일화된 사고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운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 진단할 수 있다.

과거 우리 나라의 잘못된 실정법 이론들이 이 나라 독재를 연장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지하는 데에 얼마나 이용되어 왔는가? 특히 통치행위 이론이라든지 권력분립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적용되어 실제로 법치주의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회에서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잡지 못했다. 그러나 선례가 없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날치기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재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선례를 반드시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

4.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산업사회연구소 소장)

〈파산청인축 신문〉

안영도 :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는 선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가?



외형적으로는 그러하나 내용상으로는 다르다. 우리 법안은 정리해고 요건만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같이 해고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변형근로

시간도 선진국이나 ILO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규정하면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변형근로시간이 맞물려 가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에는 필연적으로 인력재배치가 수반되리라 예상되고 그에 따라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가지려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볼 때, 정리해고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정리해고는 퇴출자유는 되더라도 진입자유와는 무관하다.

기업은 시장논리에 의존하여 꾸러기는 조직이므로 채산성이 악화될 경우 정리해고나 변형근로제는 일면 불가피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함정이다. 채산성이 어느 정도 악화되어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개정안의 요건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추상적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으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를 들었는데, 개정안에는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되어 있다. 남용될 여지가 큰 부분이다.

실업보험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 여건상 대량해고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이므로 노사문제의 영역 밖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동의할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제도는 노사가 서로 같이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적부조 부분도 정부가 하는 부분이다. 3당사자가 마찬가지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미흡하지만 실업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고용보험법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시기가 1996년 7월부터 되어 있고, 실업급여 수준은 현재 종전임금의 50%이다. ILO 기준이나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권고에도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정리해고제는 아직 OECD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해고대상의 선별은 물론 향후의 해고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노사간의 공동결정법에 의해 합의할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와 같이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고용불안을 조장하게 된다.

변형근로제는 선진국에서는 주 40시간 미만에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란 두 요소가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근로시간이 법률상으로는 44시간이지만 실제로는 대략 49시간에 가깝다. 법정 근로시간 미만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의 과제임에도, 일방적인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임금삭감만 존재하고 있다.

교원과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이번 노동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단결권인데,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대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헌법의 유보조항에 따라 제한 가능한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3권을 규제하는 선례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그렇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나라에서 노동3권을 허용하고 있다. 1993년 3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무원의,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 헌법의 정신은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률유보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인측 신문〉

김선수 : 정부나 재계에서 이번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설한 것들이 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대체근로허용 등의 문제에 관한 선진국의 경우는?

노조전임자급여 지급금지 규정은 우리 나라 노조전임자 수가 외국에 비해 많고, 외국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반드시 노동조합이 지급한다라는 두가지 전제에서 출발했으나, 모두 틀렸다. 노조전임자 수에 관해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개위에 제출한 자료는 잘못되어 있다. 반전임자를 전임자로 계산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져 있다.

선진국 자료 중 일본 자료는 학술지가 아닌 오래 된 주간지에서 인용하기도 했다. 유럽 국가의 경우 미국인이 25-30년 전에 쓴 글을 자료로 사용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전임자가 1,5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으나, 직접 조회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0명당 1명이 정확하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노조전임자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은 기업의 바깥에 있는 산별노조이다. 사업장 안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사업장 공동결정법에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제는 있으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제는 없다.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미국의 경우 지급금지나 요구금지가 아니라 강요금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즉 강제적 방법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우리처럼 요구해도 안되고 지급해도 안된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규정이다.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대체근로제를 전면 허용해 놓은 것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노개위 자료에 『선진국에서는 허용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선진국이 어느 나라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나라는 없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에서 economic strike인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나중에 파업참가자가 복귀할 때 평등하게 복귀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59년 전의 판결이고, 오히려 1995년 클린턴 연방정부는 대체요원을 고용하는 강버과는 거래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고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에서도 직접 금지규정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고용 촉진법과 근로자대여법에서 대체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사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1. 김 갑 을

2. 이 병 정

대리인 변호사 박 성 호, 김 선 수

위 법률 등의 합헌을 주장하는 이해관계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 영 도, 조 상 희

1. 판단

가. 청구인 김갑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 여부

당 재판부에 현저한 사실로 민주노총은 산하에 상당한 수의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합법적인 노동조합연합체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들의 개정 이전까지 여러 방법으로 합법화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법률 중 특히 복수노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복수노조의 합법화를 유예시키고 있다. 합법화 여부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 김갑을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수 있는지 여부 및 그를 통한 노동기본권의 향유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밖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관계 개정법률은 집단적 또는 개별적인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경우 그 법 집행의 대상이 전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고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인 바, 이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법률은 1996. 12. 31. 공포되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언제라도 위 개정법률에 따른 법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예컨대 군전역자가 군법무관 임용법의 위헌을 다투는 경우와 같이 그 자체로 사건관련성이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 김갑을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 제기기간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법률의 위헌여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 김갑을은 이 사건 개정법률 모두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

나. 위헌심판제청과 관련된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위헌제청 결정을 한 '다' 지방법원은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의 위 각 행위들은 위 헌법률에 의하여 신청인과 같은 근로자계층이나 신청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 위헌법률의 제정과 시행이라는 위헌적인 행위에 대한 헌법수호행위의 일환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위 각법률들의 위헌여부는 이 사건 업무방해죄 내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의 성립여부 및 신청인의 구속여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전제가 된다고 하겠다"고 하여 전제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견해가 명백히 잘못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법률들의 위헌여부는 이 사건 제청법원이 제청한 사건의 심리와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또 이 사건 개정법률들에 대한 청구인 등 근로자들의 정의행위를 바로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강력한 의사표시로 본다면, 그것을 단순히 현행노동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파업으로만 볼 수는 없고, 불법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복종'의 자세로 평가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불법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복종'의 자세는 민주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법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복종'의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과 시위 등이 과연 금지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다'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재판 주문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위 법원의 위헌제정은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의 거부

(1) 헌법 제1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평화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제도를 두고 있다. 만일 어떠한 집단이 의회제도를 실력으로 부인한다면 이는 헌법질서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2)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민주적 의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법률 내용의 위헌여부 뿐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입법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것인지 등의 형식적인 심사권도 함께 갖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헌법재판제도를 두고 있는 외국의 여러 예에서 이미 다분히 확립된 제도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입법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권을 갖는 것은 결코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3권분립의 원칙이 요구하는 견제 기능의 불가피한 수단이다.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해서 무효로 만드는 위헌심사제도를 채택한 헌법질서에서 3권분립의 원칙은 '분리' 못지않게 '견제' 쪽에도 무게 중심이 들어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 이 사건 개정법률 등의 위헌 여부

(1) 입법절차의 위헌 여부

헌법 제50조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국민주권 주의와 대의민주제를 근본규범으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 정책결정 내지 입법과정을 주권자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실현시킴으로써,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배되는 국회의 입법절차는 어떤 명분으로도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없다.

이와같은 의사공개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의회제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법이 제정되어 있다. 즉 국회법은 헌법 제50조가 규정하는 의사공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본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72조는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원내교섭단체와 협의하여 그 개의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조 제3항은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첫째, 특정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들에게 장차 본회의가 열릴 시간을 고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와 둘째,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원칙적으로 어느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 셋째, 원내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개의일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로 함으로써, 강압과 사술에 의한 참여배제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회 본회의의 경우 신한국당 수석부총무가 회의가 끝난 후인 6시10분경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총무에게, 6시15분경 자유민주연합 원내총무에게 회의가 있었음을 통보하였을 뿐 국회법 제72조 단서가 규정하는 의장의 협의절차가 없었다. 또한 국회법 제76조제3항의 해석상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의원 각자에게 최소한 일시만은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통지 또한 전혀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본회의는 위 국회법규정에 명백히 위반되어 무효이고, 동시에 헌법 제50조위반이다.

(2) 내용상 문제점

(가) 노동관계 개정법률들의 경우

우선 개정된 법률들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들, 즉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위반되는 것으로 관련 국제기구들에 의하여 지적되어 왔으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한 약속과도 어긋나는 노동기본권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하여도 198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합법화 논의가 있어 있으나, 이번의 개정법률들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든 선진각국의 입법례에서 오래전부터 제도화 되어 온 복수노동인정 문제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3년 또는 5년간 유예시키고 있다.

이밖에 노동기본권을 크게 제약한 독소 조항으로 알려진 제3자 개입금지 규정과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금지가 사실상 여전히 존치되어 있다. 그리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자금 금지, 쟁의기간중의 대체근로 허용 조항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은 극단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는 고용불안과 삶의 질저하 문제를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

(나) 국가안전기획법부의 경우

헌법 제12조 1항 및 3항에 따르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및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때 적법한 절차란 실체법 및 절차법 모두에서 적정한 내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더욱이 국가안전기획법 개정법률은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대하여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사권을 가지게 하였는데 이 조항들은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로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하여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들의 위반여부가 문제된 수사과정에서는 특히 형사 절차상의 기본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형사절차를 지배하는 헌법의 대원칙은 수사의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안전기획부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정보기관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설치와 조직, 인원과 예산, 활동 등의 모든 면에서 비밀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그 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피의자나 가족들에 대한 투명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그 사실만으로도 일반적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사람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2.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법률들은 그 입법절차가 모두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정의행위나 사위 등에 대한 법적평가는 위헌제청신청을 한 '다' 법원의 소관사항이나, 그것이 다른 법에 의하여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개정법률들의 무효화를 위한 노동기본권의 행사나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져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개정법률들이 위헌인 이상 이 사건 개정법률들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으며, 이제부터 논의를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 그 과정은 물론 쉽지는 않으며 상당한 인내와 오랜기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지 모른다. 그 협의의 단초는 물론 무효화된 이 사건 개정법률들을 의결한 여당과 논의의 성숙에 실패한 정부가 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적이 아니고, 과정과 절차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둔다면, 우리 모두 다같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일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1997. 1. 30.

재판관 유 현 석
재판관 이 효 재
재판관 임 재 경
재판관 허 영



단 평

인사가 검찰을 망친다

한 보사태의 검찰 수사를 빚대어 야당의 대변인이 "PK의 PK에 의한 PK를 위한 수사"라는 발언을 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비리사건의 수사에서 검사나 피의자의 출신지역이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 PK가 PK를 수사한다고 해도 국민을 위해, 사회정의를 위해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런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다. 지난 1월 23일자로 단행된 검찰의 인사결과도 인사권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언론의 표현 그대로 "대선 포석용 PK등용"에 다른 아나었다.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전국 12개 지검의 대표격인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중수.공안부장 등 3대 보직이었다. 결국 서울지검장에는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사시 8회)이 임명되었고 후임 중수부장에는 대검공안부장을 지낸 최병국 검사장(사시 9회)이 임명되었으며 공안부장에는 주선희 검사장(사시 10회)이 자리를 옮겨 PK 일색의 검찰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출신지역에 따른 인사가 바로 정치검찰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한 무수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나온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 하나가 검찰총장의 공직제한이었고, 이것이 작년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으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검찰의 수뇌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었다. 검찰총장의 공직제한을 왜 하려고 하는지 검찰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검찰을 실로 '지구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 내부의 자기반성과 정치인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국민과 검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요구

김형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사무국장)

최 근 한보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패, 비리, 특혜구조는 정치권력과 재벌이 부정한 돈으로 유착되면서 비롯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패구조의 마지막 피해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지난 1997년 2월 12일 국회에 기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개정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 1994년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법은 개정입법 당시부터 그 개정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법률적인 맹점을 안고 있었다. 이 법 제2조에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는 정작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제11조에 기명으로 선관위에 기탁해야 하는 정치자금을 정당에 국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에 무제한 무차별적으로 유입되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한 점이나, 법인의 후원회활동 및 정치자금기탁행위가 가능하여 사실상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사실상 방치(5조, 6조, 11조, 12조 등)하고 있는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기부는 처벌한다는 처벌조항을 신설(30조 7호)하고 개인에 대한 정치자

금도 선관위에 기탁(11조)하도록 했으며 법인의 후원회 가입과 정치자금기탁행위를 금지(5, 6, 11, 12조)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실에서 특정정당에게만 편중되고 있는 지정기탁제를 폐지(15조)하였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라는 원칙에 맞게 당비 및 후원회비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을 폐지(4, 6조)하였다. 그리고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을 의식비율에서 득표비율로 개정(18조)하였고 후원회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의 금품모집을 금지(6조)시켰고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를 허용(12조)토록 했다.

정치권력의 힘으로 한보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어서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면 다시 5조원의 돈을 방출한다고 한다. 이 엄청난 돈이 풀리면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일인당 약 15만원의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예컨대 갓 태어난 아이, 신생아도 출생 순간부터 15만원의 빚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4인 가족이면 60여만원의 가계빚을 새로 지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은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 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작년에 우리 참여연대가 제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부패방지법제정운동』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 



단 평

이제라도 불법구금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검찰(서울지검 공안2부 신건수 부장검사)은 지난 11월 21일 진관스님을 5일 동안 불법구금한 것에 대해 "기록이 너무 두꺼워 수사기록으로 착각했다"고 변명하면서 바로 그날 진관스님을 벌건으로 영장을 청구해 재수감했다.

검찰은 남달리 두꺼운 공소장을 핑계 삼아 그 이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검찰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 징계조치나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5일동안의 불법구금이 갖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한 처사와 다를 아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특히 인신구속에 있어 한치의 오류나 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이나 되는 기간동안 검찰 측의

착오로 인하여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이루어졌고, 게다가 벌건으로 재구속시킨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며, 인신구속에 대한 검찰의 안이한 태도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검찰은 불법구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사법개혁 50대 과제

여기에 소개하는 「21세기를 향한 사법개혁 50대 과제」는 지난 95년 1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연구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 후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었거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과제로서 끊임없이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할 목표라고 생각되어 여기에 그 목록을 펼쳐놓는다. 과제의 선정과 그 내용에 관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호부터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과제를 선정하는 것보다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21세기에 대응하는 법학교육 및 사법시험의 개혁

1. 법학교육의 개혁은 사법개혁의 시발점

- 법과대학의 교육의 전문화, 내실화
- 교육내용을 이론 일변도에서 실무교육 병행, 실무가의 교육참여 강화
- 법률적 사회봉사활동의 의무화

2. 「사법시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 사법시험제도를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 사법시험 자격제한 (일정 수준의 법학교육 이수자로 한정)
- 시험 응시회수 및 연령의 제한
- 시험과목의 재조정, 대학(원)에서의 성적, 인성에 대한 판단자료 중시

3. 사법시험 합격자의 획기적 증원이 법률서비스 확충의 전제

-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법률가의 적정수에 대한 검토

4. 법조 양성과정, 사법연수원 제도의 개선

- 대학(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합격한 연수원생에 대해 필요한 변호사 실무교육을 단기간 실시한다.
- 법학교육 개혁이 완성되면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변협에서 단기 실무교육을 담당, 실시한다.
- 판검사의 교육은 임용된 자에 대해 법원 및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5. 법조일원화 -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 대학(원)에서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고, 대학(원)교육에 실무가들이 적극 참여한다.
- 법학 교수들의 변호사자격을 허용한다.
- 법학 교수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자격을 부여한다.
- 판검사는 일정 경력의 변호사 및 교수 중에서 채용한다.

사법제도의 개혁, 사법의 민주화

6. 사법부 내 각종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관행과 의식의 개선

- 위압적, 권위적 사무방식의 개선
- 소송절차, 특히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 철저히 준수
- 법관, 검사, 변호사, 피고인의 좌석배치 재조정
- 굳림하는 사법.검찰에서 봉사하는 사법.검찰로

7. 법관, 검찰 내부의 민주주의

- 하급심 판결에서도 소수의견 표시 가능하도록
- 합의부의 실질적 구현 (재판장 영향의 축소, 합의부 2인 재판경향의 시정)
- 법관회의의 법원행정에 관한 의결기관화, 자치영역 확대
- 검찰사무규칙상의 사무보고사항 축소

8. 기존의 법원.검찰 상호관계의 정리

- 판결문 작성방식(가령, 유무죄 판결문)의 개선
- 판.검사의 사적 관계가 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 검사,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의 엄격 실시

9.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의 공정성 확보

- 법관인사위원회를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 법관 근무평정제의 개폐문제

10.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의 피라미드식 상명하복제 폐지

- 검사를 위계적 판료조직의 일원으로 만드는 검사동일체 원칙, 상명하복제 극복
- 검찰 임무의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의 재검토

11. 권력형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제'의 실시

- 더이상 의혹만 남기는 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 삼권분립은 국민의 권익이라는 잣대에서 판단되어야

12. 변호사단체의 민주화 및 활성화

- 동업자 조직에서 명실상부한 국민권의 옹호기관으로

13. 법조브로커의 근절

- 브로커에 대한 향상적 단속, 신고센터 설치
- 브로커 고용 변호사까지 엄벌

14. 법원, 검찰 윤리강령의 정비

- 판사, 검사, 일반직도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 윤리강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15. 헌법재판소의 구성·운영의 민주화

신뢰받는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16. '양형제도'의 개선과 합리화

- 양형지침서 개발
- 양형자료 수집, 조사하기 위한 법원의 직권적 활동 강화, 양형조사위원회 설치
-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논란 예방
- 전판예우를 혁파하기 위한 획기적 개선책 마련

17.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제도의 확립

- 감정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 과학수사지도과, 운영과, 문서감정실, 공안문제연구소 등)의 검.경찰로부터의 독립
- 전문가의 자질향상, 첨단과학적 장비와 감식기법의 도입
- 초동 수사관의 전문적 자질 향상

18. 오판 발생의 근본적 방지와 치유방안 마련

- 수사절차에서의 위법증거 수집, 조서취득의 방법, 감정의 형식성 개선
- 재심요건의 완화 등 재심절차의 개혁
- 공판절차의 요식성 탈피

19. 상소, 불복제도의 검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의 타당성 재론
- 국가의 남상소 방지책 마련

양질의 저렴한 재판, 변론을 받을 권리

20. 소송비용 없으면 재판도 못 받는가

- 인지대의 대폭적 인하 또는 폐지
- 감정, 감정비용의 적정화

21. 변호사, 문턱을 낮추자

- 변호사보수의 합리화, 적정화, 법정화, 보험화
- 보수 납입방법의 개선, 계약문서화, 공개화

22. 변호사의 전문적 소양과 자질향상

- 재교육, 미국의 CLE제의 도입 등
- 법과대학원에서 전문과목 학점 이수 의무화
-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재교육 유도
- 전문영역을 가진 전문변호사로의 전환

23.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윤리의 제정

- 거미줄 같은 윤리강령의 제정과 실시
-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 확보와 징계권 강화
- 윤리강령의 준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외부적

감독장치 마련

24. 국선변호의 실질화와 전문화

- 무성의와 저렴화의 악순환에 놓여있는 현행 국선변호의 문제점 검토
- 공공변호사(public defender) 제도의 도입 등 제도개선책 마련

25. 사회적 약자, 빈곤층에 대한 사법적 배려로서의 법률구조의 활성화, 실질화

- 법률구조공단의 활성화, 유능한 변호사 유치,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을 판검사 임용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 민간법률구조단체에 대한 지원 활성화와 후원
- 공익 법률구조사, 고익법무관의 도입 내지 활성화
- 빈곤층, 방어능력이 없는 약자에 대한 배려의 제도화

시민생활과 조화되는 사법

26. 기다림의 고통,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 '육조지'는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 시차제 소환, 대기실 마련, 안내창구, 안내책자의 활성화
- 집중심리, 심리축진을 위한 방안마련

27. 일상생활과 조화되는 수사, 재판, 행정절차 도입

- 재판 관계자들의 일상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소환제 실시
- 주말구금, 야간구금, 휴가구금제의 도입
- 배우자(무감독) 접견제, 영유아의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 보장

28. '법원·검찰 창사' 시민의 편의에 부응하도록 개선

- 이용자(시민)에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와 배치를 바꾸자
- 각종 벌과금으로 짓는 법원, 검찰청사
- 편의공간(휴식공간, 대기실)의 시급한 확보
- 국민의 법률학습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9. 사법경찰의 수사권 독립 또는 검찰 하의 사법경찰

대설치

- 중복된 소환으로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 현행 제도는 국가재정과 인력의 낭비
- 검·경의 국민편의를 볼모로 한 조직이기주의 타파

30. 사법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정보청구권 확립

시민의 사법참여

31. 배심제와 참심제, 남의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 외국 사례에 대한 적극적 검토 : 배심제, 참심제 등 시민참여제도
- 도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우리의 여건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개선작업

32. 검찰권 행사에서의 시민참여

-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
- 사인소추, 기소강제주의 등의 검토

33.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임명시의 국회 인사청문회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한 최소요건

34. 고문과 불법구금 등 비인간적, 굴욕적 대우의 종식

- 고문방지 조약 가입에 따른 국내법령 정비
- 일종의 고문인 철야수사의 금지
- 고문자에 대한 엄벌과 공소시효 철폐, 공직사회로 부터의 추방
- 사법참여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시 및 정규교육과정으로의 채택

35. 즉결심판제도와 유치장의 개혁

- 일제의 잔재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검토
- 경미범죄, 자유형에서 벌금형 위주로의 전환
- 유치장의 수준 향상

36.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구속제도의 운영

-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 보석, 적부심을 원칙적으로 허용, 불구속수사 재판의 원칙화
- 무죄,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 '즉시' 석방되도록
- 미결구금 기간 중에 피의자, 피고인의 대우를 일반인과 같게(복장 등)

37.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혁

- 구속기간 축소, 불구속수사의 원칙 보장
- 피의자,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화와 피해자 권리의 존중
- 수사절차에서 변호인 참여의 보장

38. 교정시설과 관리 : 전근대적 교정행정, 행형시설의 획기적 개선

- 과밀수용의 폐단 개선
- 기호품에 대한 권리(흡연, 커피 등) 인정
- 건강유지, 문화생활에의 요구 충족
- 직업훈련, 학습·교육의 강화로 실질적인 사회복귀 능력 키우는 행형
-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는 행형을 향하여

39. 인권청 : 인권청의 신설로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야

-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중앙기구의 신설 (법무부의 外廳으로)
- 인권침해법령의 정비, 인권진정 처리, 인권정책을 위한 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
- 장애인 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외국인노동자 인권, 그리고 북한인권 등 인권전반에 관한 인식제고와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
- 외국의 사례(영, 미, 호주)에 대한 연구발표
-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국제조약화에 부응하고, 국제인권신장에 한국의 공헌도를 높여야

40.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의 정례화
-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교육, 인권침해사례 시정

41. 국가안전기획부 : 더 이상 인권침해의 성역으로 남을 수 없다.

-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유지하도록
-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국회정보위의 밀실화 타파

다양한 분쟁유형에 대한 처리방법 개선

42. 집단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개선

- 현대는 집단분쟁의 시대
- 종래의 법률과 기구만으로는 집단분쟁 해결에 부적절

43. 공익소송의 가능성 열어야

-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다양화, 실질화 등
-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 시민, 환경운동단체의 소의 적격 및 소의 이익 인정

44. 비형법적 제재방안을 다양화해야, 사건의 성질에 가장 적합한 재판유형 마련

45. 비재판적 분쟁해결방법 유형 마련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사법을

46. 법률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사법개혁 추진

47. 남북통일에 대비한 사법개혁 추진

48.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선진한국이 되기 위한 사법개혁 추진

49. 법률 정보의 첨단화, 법률정보의 신속한 유통과 대중화

50. 제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 사법개혁의 최종 담보는 국민의식의 변화
- 외국의 사법개혁 선례 소개
- 무너지지 않는 사법개혁의 탑쌓기

소송비용 중 감정료에 대하여

정주식 변호사

소송비용은 크게 나누어 재판상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재판상 비용은 당사자 등이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접증비, 감정료 등을 의미한다.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지출되는 것이지만 재판상 비용은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즉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고, 변호사의 보수도 변호사와 당사자 사이의 자유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지만, 인지대, 감정료 등의 재판상 비용은 소송절차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금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감정료 등의 비용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감정료의 부담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조사를 망설일 때가 있다. 또한 감정료의 부담 때문에 사건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화해를 하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감정료는 직접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보지 아니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액인데, 심지어 1년 넘게 사건에 매달리고 있는 변호사 보수보다도 짧은 시간에 끝나는 감정인의 감정료가 훨씬 많은 경우도 있다.

문제는 법원에 납부하는 감정료가 소송절차 외에서 감정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감정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법원이 감정료가 너무 비싸다는 데 있다.

감정료가 변호사보수보다 많은 경우도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소송관계인인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재판유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및 민사소송비용법은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중 국고가 절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 가사소송, 보전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민사소송은 구체적인 사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분쟁해결에 필요한 개개의 행위비용은 이를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증거조사 등 비용이 드는 행위의 신청납용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합리적이지는 않다. 물론 소송비용은 종국적으로 보면 재판확정후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 의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소송절차 진행 중에는 그 부담자가 미정이므로 우선은 감정의 경우에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을 하게 되어 있다. 비용의 예납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법원의 예납명령을 받고서도 응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결정은 직권으로 취소되고 만다. 따라서 감정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당사자는 감정에 의하여 밝히려고 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준에서 산정되었는지도 모른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는 감정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감정은 천태만상이지만 가장 흔히 행하여지고 있는 것은 지적현황측량, 복원경제측량 등 위치감정, 분할측량, 싹가감정, 임료 및 사용료 감정,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신체감정, 건축비감정, 필적, 인영감정 등이 있다. 감정료를 산정함에는 사무의 난이, 성과, 그에 요한 노력과 시간 기타 제반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바이지만, 몇 가지 감정유형에 대하여는 주무부서로부터 인가받아 시행되고 있는 유자격자의

보수규정이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일정유형의 감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예규로서 일용 준거할 수 있는 산정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감정료의 총금액의 예납명령을 받을 뿐이고 어떠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감정료가 산정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그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방도도 전혀 없다. 실제 실무판행상 서기과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하여 감정료가 결정되며, 감정인들은 감정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위 비용까지 포함하여 시중 감정가 보다도 엄청나게 비싼 감정료를 청구하고 있다.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산정의 투명성 보장

감정료에 대한 제도개혁은 결국 감정료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로 귀착된다. 과다한 감정료 때문에 입증방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물론 감정인도 노력에 대응한 적정한 감정료를 지급받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감정료에 대한 거품을 제거할 방법은 감정인의 선정 및 감정료 산정의 투명성의 보장이다. 감정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초에 법원에 등록을 하며, 법원은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과 유착된 몇몇 감정인이 감정을 독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감정인은 과외의 비용이 지출될 것이고, 그 비용이 그대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된다. 사실유무는 알 수 없으나 감정료 중 일정비율이 서기과에 상납된다는 등의 소문이 재야법조 사이에 나돌고 있기도 하다.

감정인은 전문직으로서 어느 감정인던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감정을 할 것이다. 특별히 법원에서 촉탁한 감정이라고 하여 비용을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법원에 감정증인으로 출두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증인여비를 지급받게 되므로 법원출두를 핑계로 과대한 감정료를 청구하여서는 아

니된다.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과 폭행사건에 있어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는 것과는 수수료에 있어서 거의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결국 감정인들이 감정료를 청구할 때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재판부의 감독 강화 필요

법원도 감정료의 예납명령을 내릴 때 그 구체적인 명세를 기재하여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그 내역을 알게 하여야 한다. 내역도 전혀 모른 채 몇백만 원의 감정료를 납부하는 당사자는 당연히 오해와 불신을 갖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명세가 공개된다면 상당한 정도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실체가 아닌 절차에 불과한 문제라고 하여 감정료의 적정액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 비난은 결국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감정료의 액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정의 결과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감정결과와 재감정결과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무슨 이유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곤란이다. 정확한 감정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대전제이다.

현재의 감정료가 과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지적하는 사항이며, 과다한 비용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면 사법정의에 반한다. 감정료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는 것도 국민의 참여로 인한 사법개혁의 하나이다. 

작은 권리의 주장은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수형 (동아일보 뉴스플러스부 기자)

70~80년대 격동기에 열정을 갖고 젊음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된 인생목표는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같은 집단적 이상주의는 허망한 것이 되어 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대흐름에 좇아 일상사에 묻혀 개인과 가정의 쾌락, 행복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온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다. 그 불씨는 언제든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것이다.

헐리우드 영화로 더 잘 알려진 존그리섬의 소설 「타임 투 킬」에서 쫓내기 변호사 제이크는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말한다. 「자네 혼자 힘으로 세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다시 이어졌다. 제이크의 대답. 「내가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서(Case By Case)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러면 세계는 변한다」

제이크의 말대로 우리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처하는 하나하나의 상황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상(理想)의 르네상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전철의 상습적인 지연운행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철도청에 폭파협박 전화를 한 이원철씨(37) 사건은 각박한 현실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다시 던져 주었다.

96년 2월 이씨가 철도청에 폭파협박 전화를 했을 때 우리의 「법」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것이 정의인가. 사실 이씨가 전화로 철도청에 한 말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었다. 법은 물론 「협박」이라는 형식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그동안 전철이 시민을 대접해 온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협박」은 형법에 「정당방위」가 있듯이 「정당협박」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협박범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시민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법의 정의는 그를 협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었지만 시민의 정의는 그 「협박범」의 굴레를 벗겨주는 것, 그리고 그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철도청을 「응징」하는 것일 수 있다.

이씨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을 무렵 이씨 가족에게 연락을 해 보았다. 이씨는 예상했던 대로 일반

협박범과는 명백히 달랐다. 그는 전자제품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24평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30대 가장이었다. 아이를 위해 육아일기를 꼬박꼬박 쓰는 자상함도 지니고 있다. 그의 부인 최숙자씨(35)는 「(남편 이씨가) 결혼생활 15년동안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협박전화를 한 동기에 대해서도 부인은 「한달에 두세 번씩은 전철이 30분 정도 연착해 지각하기 일수였고 이 때문에 사표를 낼 뻔 하기도 했다. 철도청에 항의전화를 몇차례 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사회문제화시키기 위해 협박전화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론간사인 유선영 변호사에게 이씨 무료변론을 맡아보라고 권유했다. 유변호사도 동의했고 참여연대의 박원순 변호사도 나섰다. 그러나 이씨 가족이 이미 인천의 장백규 변호사를 사전으로 선임해 놓은 상태여서 주심 변호사 역할은 장 변호사가 수행했다. 장 변호사도 이 사건에 대해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재판부에 이씨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도 전했다. 구속된 지 한달쯤 지나 이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6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

청와대는 법 위에 있다?

- 청와대 사칭 사건 사건 발생현황 -

제177회 정기국회에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중 "청와대 사칭 사건사건의 발생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0년 1월 이후 96년 6월말까지 발생한 청와대 사칭 사건사건은 총 70건이며, 현 정권이 출범한 93년 2월부터 발생한 사건은 56건에 달한다.

얼마나 어리석다면 이런 사건꾼에게 당하느냐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피해자 중 경찰서 과장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와대 사칭 사건단의 수법이 만만치않은 않은 모양이다. 울산과 미산 소재의 경찰서 과장들은 청와대 고위층에 청탁하여 총경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것에 속아 3천만원을 사건단에 주었고, 몇 군데의 지방역장들은 청와대 민정비서실 인사담당과장을 사칭하는 것에 속아 향응과 돈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 중 대부분은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거나 고위층을 통하여 각종 인허가, 취직알선, 대출알선 등을 쉽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금액도 상당해서 작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800억대의 돈을 건내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권력이 있으면 그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권력이 과도하게 청와대로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법대로 해서는 되지 않는 일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남아 있는 한 이러한 사기행각은 계속될 것이다.

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공소내용중 상습협박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단순협박만을 인정했다.

이씨는 사건 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씨는 필자에게 "생전 처음 해보는 낯뜨름이어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죄값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힘든 순간을 넘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후 우리 뉴스플러스 독자와 연결돼 토목용역업체인 「한국도시산업」(대표 임운식,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관리과장으로 취직해 근무중이다. 이씨는 지금도 아주 만족하며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첫 월급을 타 동아일보에 수재의연금으로 10만원을 내기도 했다. 이씨는 그렇게 평범한 시민이었고 다시 평범한 자리로 돌아갔다.

전철사건의 형사소송이 그런대로 정의를 회복한 데 반해 민사소송은 일단 첫 단계에서 좌절을 겪었다. 이 씨 사건 이후 참여연대 주관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지난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했다.

이 재판은 96년 4월 30일 첫 재판이 열린 이래 12월 12일 결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9차례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소송은 공공시설(영조물, 營造物)의 운영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인 시민들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소송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또 재판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국가의 '은혜'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권리'인가를 둘

려싸고 원, 피고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송을 낸 당사자(원고)는 전철 1호선 이용 시민 6명이었다. 당초 100여명이 소송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소송진행의 편의를 위해 이들 6명이 대표선수로 나섰다. 김씨 등은 1인당 6백만원씩 모두 3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소송진행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익소송센터가 맡았다.

재판의 쟁점은 간단했다. 전철 지연운행으로 원고들이 피해를 당했느냐의 여부,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피해가 있었느냐에 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 피고(국가) 측은 "원고가 언제 어디서 어떤 전철을 탔고, 그 전철이 얼마나 늦었으며 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인 박성호 변호사는 "전철은 러시아워에는 보통 2~3분 간격으로 운행하므로 전동차 1개가 사고등으로 지연운행하면 나머지 모든 전철이 늦어진다. 따라서 전철 사고와 이로 인한 지연운행이 늘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전철 이용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사실만으로 피해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의무를 지느냐에 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훨씬 더 첨예하게 맞섰다. 피고측은 "전철 이용관계는 국가와 이용자간의 여객운송 계약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국가 고유의

기능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私)경제의 주체로서 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또 "설사 국가의 배상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철 운행에 관해 철도청(국가)이 예산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으므로 이용자인 시민으로서 그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전철은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철도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이 제5조등에서 공공시설의 불완전한 관리(유지 보수)로 물적 사회적 기능적 결함을 발생시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가가 배상의무를 저야한다"고 반박했다.

소송결과는 원고패소였다. 재판부는 20여쪽의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도 고심을 한 흔적이 뚜렷하다. 재판이 끝난 뒤 담당부장(서울지법 심재돈 부장판사)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부장은 "피고 철도청의 과실이나 원고들의 피해중 어느 것이라도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 있었으면 사정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과실도 중대하지 않았고 피해도 사망이나 중상과 같이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심부장은 또 "시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액수의 배상판결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습적인 지연운행과 잦은 고장, 불친절 등 국가의 「전철청포」에 대해 시민들이 집단적인 「불복중」운동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전철소송 1심은 이렇게 시민들의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시민들은 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설 속의 변호사 제이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그 자체로서 승리를 했다고 믿는다. 또 시민들은 전철사건 이후 철도청이 서비스를 눈에 띄게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이용자인 시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자세를 가짐에 따라 실질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는 버스비리 없어지지 않는다

지난 해 말 서울시내 버스비리와 관련되어 기소된 공무원, 버스회사 대표 등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진봉진 부장판사)는 서울시 버스비리와 관련, 거액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5년이 구형된 서울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유쾌하(71, 서울송합대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씩이 구형된 서부운수대표 김진형(59), 태진운수대표 정진섭(59)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한 서울지법 형사1단독 심상철 판사와 형사4단독 조병훈 판사는 버스운송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서울시 교통관리실장 김동훈(57, 1급)피고인과 전 서울시 교통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이 선고하였고,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 판사가 서울시 전 노선담당계장 김용덕(57)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가 전 서울시 대중교통1과장 박동혜(46)피고인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을 선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버스비리 관련자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선고가 내려졌다.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모두 풀려나는데, 이것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어서인지 재판결과 피고인들의 잘못이 없어서인지 좀처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버스비리 사건은 흔하다 흔한 몇 백억, 몇 조원의 비리는 아니지만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야 할 운수회사와 시공무원들이 뇌물과 횡령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렀다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시민들은 걱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정부패가, 뇌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댕값이 없어지지 일소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제, 선진사법으로 가는 촉매이다

- 인신구속제도개선에 대한 평가토론회 -

2월 17일 서울지방법원사회관에서 "인신구속제도개선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번 평가토론회는 인신구속제도가 변화된 한달을 평가하고, 특히 영장실질심사제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영장실질심사제가 선진사법으로 가는 촉매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토론의 내용과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헤쳐가야 할 난제가 많이 있다. 토론내용 중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실무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검토와 반론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실질심사인가 형식심사인가?

하태훈(홍익대 법학과 교수) / 피의자심문에 의한 영장발부여부의 결정이 도식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컨대 직장이 있으면 도주염려가 없다든지, 자백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피해변제노력을 가족이 하고 있다든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든지,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만일 종합적인 판단없이 이러한 사유만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타당치 못하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우려 및 사회적 위험성이 도의시되었다고 해서, 또한 피해자의 인권과 국민의 법감정이 무시된 결정이라고 해서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도 또한 온당치 못하다.

이와 같은 비판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신은 구속 사유의 기재가 불충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증거인멸을 준비하고 있거나, 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거나, 제3자의 생명(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염려 있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충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왜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과 합의금 확보수단으로서의 구속?

이수형(동아일보 뉴스플러스부 기자) / 피해자의 인

권과 피의자의 권리는 엄격히 말해 별개의 문제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피해자의 권리를 희생시켜야 한 다든가 하는 식의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같은 차원의 문제로 두면 오류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의자의 인권은 형사소송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대폭 신장되었는데 피해자의 권리보호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다. 예를 들어 형사배상제도를 보면 요건도 까다롭고 액수도 적어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면 단기실형을 언급하는 것이 대단히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는 것을 느낀다. 이전같으면 가해자가 합의를 하고 치료비를 물고 할 사건에서도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만나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피의자도 우리 사회에 많지만 피해자도 많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그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소리높여 결국 영장실질심사제도가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인섭(서울대 법학과 교수) / 형사사법의 큰 틀 안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만 개선됨으로써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의 인권도 피의자와 피해자 그 어느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크게 신장되었다면 피해자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해야 한다. 피해자 인권이 문제라고 해서 선진사법의 촉매인 영장

실질심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불구속이면 수사못한다?

하태훈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되어 풀어 줘야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반문한다. 그러나 이제 수사기관은 신병확보를 통하여 자백을 획득하려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수사방법으로 대처하거나 개정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체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원도 수사기관의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에 의하면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불응의 우려를 인정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긴급체포의 남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긴급체포제도는 수사의 편의를 위해 탈법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신병확보를 위한 과거의 불법적 임의동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긴급체포는 48시간 내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영장 없는 구금시간이 연장되게 되었다. 또한 검찰의 사전지휘에서 사후승인으로 바뀌어 경찰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었다.

손동권 (국민대 법학과 교수) / 개인적으로는 긴급체포구속제도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것은 긴급체포구속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통제 없는 수사권이다. 긴급체포구속을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허용하되 사후통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 같이 수사기관이 체포하고 지체없이 실질심사하는 법관에게 인치해서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게 되어 있어 경찰이 체포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실현불가능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위임의 방법을 모색하거나 해서 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김철준 (변호사) / 개정법이 시행된 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활용하기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등 긴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사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사후 승인만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경찰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입법론으로서는 긴급체포이후 법원의 사후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사가 사후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의 남용을 통제하거나 법원이 나중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속=처벌이라는 국민의 법감정?

하태훈 / 구속을 범죄에 대한 응징으로 이해하고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들면 일단 구속하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이기 때문에 불구속수사를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을 무시하고, 이는 결국 사법정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과연 국민의 법감정이 반드시 타당한 것이어서 이를 존중해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국가의 형벌권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정당한 것으로 오인한 국민의 일반인식은 잘못된 실무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는 것이 바로 법과 사법의 임무이다. 이를 고려하여 법원은 법정구속을 시키거나 벌금형 또는 유예의 혜택을 기대한 피고인에게는 짧지만 충격적이고 매서운 효과를 갖는 단기자형의 선고로 사법부의 엄격한 처벌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집행유예선고시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처벌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한다.

유전불구속, 무전구속?

하태훈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두고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을 가한다. 구속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여 직업도 주거도 없고 변호인을 선임할 재력이 없는 피의자는 구속될 수밖에

정기구독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격월간 잡지라, 게다가 30여쪽 남짓의 작은 책에
1년 구독료 20,000원을 투자하는 것이
선뜻 내키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낱씨를 꼬박꼬박 지켜서 손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구독의 의사와 무관하게 책상에 얹혀 있는 책인 것을...

여러분들도 하시다시피

「사법감시」의 구독자는

구독료를 내지 않는 많은 분들의 뜻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료만으로 「사법감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사법감시」는 저희를 믿고 납부하신 구독료와
참여연대에 회비를 꼬박꼬박 내주시는 시민들의 힘과 돈으로
만들어지고 발송됩니다.
당연히 너무나 벅합니다.

「사법감시」가 여러 독자의 손에서 빛을 발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면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기구독신청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격월간 「사법감시」 1년 정기구독료는 20,000원입니다.

아래의 온라인 번호로 무통장입금을 하신 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연락주시거나,

지로용지를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15-21-0808-184

제일은행 : 325-20-123107

농협 : 094-02-092853

예금주: 문혜진

지로번호 : 7615524

없는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변호인을 선임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피의자도 직업과 주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불구속될 것이고, 반대로 일정한 주거도 없고 무직인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망의 염려는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인을 선임할 자격이 없는 자의 사회적 불평등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은 -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 등의 방법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피의자심문은 왜 임의적인가?

하태훈 /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도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규칙 제96조의 4).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심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심문을 필수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과 심문하여야 할 경우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를 규정한 점이 아쉬운 점이다.

피의자심문제도는 피의자심문없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에도 피의자심문을 거친 후에 기각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기는 하지만,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관이 피의자의 진술태도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법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직접주의원칙과 법원의 부당한 재량권 행사를 고려한다면 입법론적으로는 피의자의 심문을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기실형 선고의 문제점 검토

김철준 /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 이후 단기실형을 활용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과연 법원이 실형선고를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 누범이 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제재 등 각종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단기실형

이외에 다액의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형태의 형의 선고를 해야 할 것이고, 실행전과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결정사유를 삼는 규정이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수형 / 단기형이 본격적으로 선고되는 시기에 법원에서 방침대로 단기형을 선고할 수 있을지 두고박야 한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오히려 남용한다면 또다른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할 때 법원이 과감하게 단기실형을 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다고 본다.

수사기관은 밤낮없고 법원은 하루 3회만?

하태훈 /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이 결정된 경우에는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오후 2시,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오후 4시, 2시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10시로 심문기일을 지정한다. 영장전담법관 또는 당직법관이 피의자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구속영장 청구사건 중 심문기일이 토요일 오후 또는 공휴일로 지정된 사건의 피의자 심문 및 구속여부의 재판이 당직법관의 업무에 속하게 한 점과 심문기일과 심문장소의 통지를 서면, 전화나 모사전송기 기타 가장 신속한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오후 2시 이후에 영장이 접수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날 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야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수형 / 작년까지만 해도 당직판사가 있어서 야간 심사를 했는데, 지금은 저녁 5시면 모두 퇴근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야간 영장전담판사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얼마 전 천안에서 어렵게 범인을 체포해서 법원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수사기관에서는 보호라고도 하고)했는데, 다음날 영장청구를 기각해 버렸다. 48시간 내 영장청구를 하는 것이 시골벽지에서 도망 다니는 범인을 체포하고 청구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정시

퇴근 후 자유시간을 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판사가 "구속은 원래 법관이 해야 하지만 제도의 잘못으로 그동안 검사가 해왔고 이젠 되찾은 상태인데 앞으로 판사를 평가할 때는 구속을 몇 명 시켰나 등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앞으로는 대검 중수부가 누구를 구속했다고 기사를 쓰지 말고 영장전담 누구 판사가 구속했다고 써야한다"고 한다. 법원이 과거에 확보하지 못한 사법권력을 총체적으로 확보하여 행사하지만 이에 비해 책임성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본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오히려 강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철야조사는 일종의 고문수사

김철준 / 수사기관은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 아니며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동안에도 공안사건이나 중요사건에서 철야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철야조사가 더욱 빈번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철야조사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일종의 고문수사이며 불리진술거부권의 침해로도 볼 수 있다.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영장심사과정에 대한 참여방법 홍보

김철준 / 현재 영장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의 과정에 피의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변호인의 참여율도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가족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할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있지 않다. 이 부분에 변호사나 당직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방법이 없다. 법원이 피해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원의 민원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This page is one of the 4 most-linked-to pages on the entire World Wide Web!

이현 (zioman@unitel.co.kr)

인터넷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늘도 많은 홈페이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네티즌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은 홈페이지 중에서 자신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찬 게임이 가득찬 곳을, 전공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전공에 대한 자료가 가득한 홈페이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자료들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곳이라면 금상첨화이다.

오늘은 블루리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기로 한다. 인터넷에 대한 조금이라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Free Speech Online, Blue Ribbon Campaign'이란 글귀가 들어 있는 블루리본이 달려 있는 홈페이지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블루리본은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기본권 보장

향후 통신법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신법의 전문과 이 법에 대한 분석을 보려면 'Legislative & Legal Info'를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인터넷 상의 검열에 대한 법 전문과 그에 대한 분석, 판결문, 관련기사 등도 볼 수 있다.

그리고 'Internet Censorship Legislation Alerts Page'를 두드리면 여러분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지, 왜 블루리본 캠페인에 동참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놓고 있다. 또 'Other Blue Ribbon Pages'에서는 블루리본 캠페인에 동참하는 전세계의 단체들을 링크해 놓고 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단체들만이 블루리본 캠페인에 동참하는 전부는 아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수천개의 웹사이트에 블루리본이 달려있다.



"EFF에서 제공하는 3가지 모양의 블루리본"



운동의 상징이다.

블루리본 캠페인은 의미는 다르지만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경고를 보내는 붉은 리본과 베트남전의 전쟁포로와 실종자를 위한 노란 리본 등에서 착안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노동관계법,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 사태가 있는 후 통신공간의 많은 동호회에서 '근조민주주의'라는 용어와 함께 검은 리본을 표기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1996년의 통신법(Telecom Bill)에 대해 많은 이들은

국내에서도 통신검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지 오래이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블루리본 캠페인의 취지에 동감한다면, 'Blue Ribbon Graphics'에서 제공하는 3가지 모양의 그래픽 중 하나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블루리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본부격인 EFF(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서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을 위한 Golden key campaign을 함께 벌이고 있다. EFF는 World Wide Web에서 접속회수로만 4위 안에 든다. 접속해보아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블루리본 캠페인의 주소는

<http://www.eff/blueribbon.html> 이다.

꺾여진 짧은 인생과 15년의 억울한 옥살이

이 글은 지난 2월 1일 수원에서 억울한 옥살이와 사회적 냉대를 비판하며 자살한 김환(35)씨가 남긴 유서의 전문이다.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에서는 고인의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결성하였고, 오는 3월 24일 고인과 지금까지 사법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갖기로 하였다.

김환의 남긴 글

이젠 그날이 확실히 온 것 같다.

벌써부터 나의 죽음을 생각했었지만 세상에 대한 조금의 미련 때문에 지금까지 망설였었다. 내가 처음부터 죽음을 생각한 것은 두 가지의 피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는 억울한 살인자의 과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를 낳은 혈육을 찾았을 때도 그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당했음이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지나온 일들을 몇 장의 글로서 피력할까 한다.

나는 서기 일천구백칠십칠년 팔월 십이일 강도살인이라는 실로 엄청난 죄명으로 징역 15년을 받고 처음 금천소년교도소에 수인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물론 타인들이 볼 때는 죄를 지은 대가로서 받을 것을 받았다고 말할겠지만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글을 남기면서 결단코 조금의 허위진술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솔직히 어린 나이에 배가 고파서 밥을 훔쳐먹으려고 남의 집 담을 넘어 그 집의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그 집의 식모가 연탄불을 갈려고 지하실에 들어왔다가 잠이 들어 있는 나를 보고 너무도 놀란 나머지 파출소에 신고를 한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끄는 데로 끌려가 조금 있으니 체구가 큰 형사들이 와서는 내게 있는 물건들을 모두 꺼내도록 하더니 다짜고짜 개봉동을 아느냐고 하면서 파출소의 어떤 방으로

데려가 손과 발을 뽁뽁 묶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엄인호, 김찬구, 또 한 명의 이름은 기억 없음. 당시에 강서경찰서 형사였다)의 실로 엄청난 괴로움의 고문을 받아야 했다. 수건을 얼굴에 덮은 뒤 생 고춧가루의 물을 붓는가 하면 방의 이곳저곳에 마치 럭비볼을 던지듯 나를 동댕이치면서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오로지 개봉동 사건만 묻는 것이었다. 나는 진정으로 개봉동이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고문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시키는대로 진술서를 꾸몄다. 현장 검증도 그들이 시키는대로 해주고 다른 건도 전부 다 해줬다. 생각해 보다가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로 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아마 고문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의 심정을 모를 것이다. 어쨌든 나는 그들이 시키는대로 자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결론은 15년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형을 받게 되었다. 처음 몇 개월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러나 2년이 흐른 뒤 나는 나의 억울함 때문에 도저히 생을 살기가 싫어지고 그저 죽음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스스로 교도관을 인질로 잡은 후 나의 요구를 말했지만 그들에게 번번히 거절당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결심을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들이 적당하다고 주어진 형기를 살고 나오려고 했었다. 나는 차라리 사형이라도 받아서 그냥 나의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결국 나는 15년이라는 형이 확정되었고 금천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마치 흔들리는 갈대가 같아서 나의 억울함을 어느 곳에도 알리고 싶은 마음에 교도관을 인질로 삼아서 다시 재판을 받게



민주화에 역행한 경력이 문제다

대법원은 2월 24일 신규임용 법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과거 국가보안법 실행 전력을 가진 안병용(35)씨의 임용을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작년 민주화운동 경력을 숨은 이유로 3명을 탈락시킨 검찰도 국가보안법 실행 전력이 있는 이면재(36)씨의 임용을 거부했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경력자들의 임용탈락 사태는 운동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합격한 28기 사법연수원생들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과 검찰이 엄혹한 독재시절 침묵하지 않고 민주화를 외치며 투쟁한 사람들을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독재시절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와 판결에 얽매던 파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판사와 검사들의 반민주적 경력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사면,복권 조치로 민주화투쟁의 정당성을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의 경력만을 문제삼아 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이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전의 판결이 정치적인 것이었음이 밝혀진 사건들, 대표적인 예로 김근태씨 고문사건이나 권인숙씨 성고문사건에서 진실을 왜곡한 판결을 내리고 명확한 증거를 배척한 판사들이 법원의 수뇌부에서, 게다가 임용권을 쥐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보안법 전력을 가진 사람들의 임용을 탈락시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국보위에 몸담았던 사람들, 독재시절 청와대에서 정권의 시녀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검찰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구속한 사람들을 검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용기 있는 젊은이들의 민주화투쟁 경력을 문제삼자면 반민주적 정권의 선봉에 섰던 자신들의 경력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당사자 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되고 나의 억울함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꿈쩍도 하지 않은 채 2년이라는 추가형만 나를 더욱더 절망적으로 만들었고 끝내는 그곳에서 요시찰인물이 되어 더욱 나의 생활은 어렵게 되었다.

어쨌든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못 배운 공부도 배우고 자신을 인내하면서 네 개의 자격증을 따내고 일어와 한문을 배우며 많은 노력을 하던 차에 97년 부처님 오신날에 가석방이 되어 그리운 사회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열다섯에서 어느덧 서른 둘이 되어 나와보니 사회는 마치 다른 외국에 온 것처럼 어리둥절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랐다. 일가친척 없이 혼자인 나로서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이런 차에 나는 나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었고 술을 입에 대면서 나의 마음과 정신은 병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당시의 형사들에게 복수를 생각하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반발심은 더욱 커져갔다. 진짜 그들을 찾아서 살인을 하고도 싶었고 별별 최악의 생각들을 다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이 구차하고 더러운 인생을 마치기로 한 것이다. 끝으로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나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경찰관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어떤 자기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못 배우고 어리숙한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서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해서는 안되리라 믿는다.

그 동안 나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던 고마운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죽음을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친아버지를 찾았는데 그로부터 자식이 아니라는 외면을 당해야 하는 서러움이다. 물론 그에게는 새로운 자식이 있었고 부인도 있으니까 나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몸부림인 것은 알지만 너무도 냉정하게 외면을 당하고 보니 나의 괴로움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특히 설날과 한가위와 같은 때는 혼자라는 외로움에 더욱 나를 괴롭게 만들고 죽음을 더욱 부추기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제 누구도 원망치 않으며 홀연히 떠날 것이다. 혼자라는 외로움에 더욱 나의 죽음은 쓸

쓸할 것이다. 그 동안 나로 인해서 마음적 물질적 피해를 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드리며 저승에서나마 그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간절히 빌겠다.

특히 동우에게 미안하다. 나를 친형제처럼 생각했는데 오히려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갚지도 못하고 이런 꼴을 보여서 정말로 미안하다. 아울러 나에게 정과 사랑을 주었던 영숙, 윤후에게 미안하고 최여사님, 김여사님, 강여사씨도 정말 미안하다. 그들은 나같은 놈에게 애김없이 사랑을 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떠나다니 어찌 인간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나는 결코 그들의 은혜는 잊지 않고 떠난다.

施人愼勿念 受施愼勿忘

한글

격월간 「사법감시」

통권 제5호 / 1997년 3월

등록번호 마-2428

발행인 김중배

편집인 박은정

편집자문위원 남영진(한국기자협회 회장)

심재우(교수, 고려대 법학)

유현석(변호사)

한상범(교수, 동국대 법학)

한승현(변호사)

편집위원 강기원(변호사)

박경자(사법제자리농기시민모임 회장)

박원순(변호사)

안경환(교수, 서울대 법학)

차병직(변호사)

한인섭(교수, 서울대 법학)

통신위원 권규대(변호사/부천)

김외숙(변호사/부산)

김철준(변호사/수원)

나영명(전국병원노련 편집부장)

문종운(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박래균(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조국(미국 버클리대학)

발행처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 팩스 793-4745 / 통신 ID : PSPD

변호사 이용안내 책자 『변호사와의 만남』 발행



서울지방법변호사회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배포용으로 만든 소책자로 변호사의 업무영역과 윤리강령, 소송절차, 수임료의 기준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변호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알고보면 좋은 이웃입니다>라는 호소로 시작되는 이 책은 총 95쪽으로 삽화와 사진을 첨가해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여 만든 것으로 변호사단체와 시민들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 좋은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절실한 것은 변호사들의 도덕적 의식과 공익적 실천일 것이다. 시민과 가까워지기 위한 지방변호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변호사 직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단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책자의 내용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활동 문의 전화 (02) 3476-6000

1997. 3.

격월간 **헌법**간시

제8호 부록

-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96년 4월 법조인정보자료실 운영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2,600여명의 전현직 판검사들의 자료를 개인별로 수집 분류 평가하여 왔다. 이 작업은 예상대로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많은 대학생 자원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법조인정보자료실의 내실을 다져주었다.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이러한 법조인정보자료실을 기반으로하여 김석수 대법관과 김진우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대법관 후보자에 해당하는 20명의 법원장급 인사에 대한 평가작업을 96년 12월부터 별도로 진행하였다.

법조인정보자료실의 첫 공개일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평가였기에 실질평가의 기준표를 마련하여야 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판결성향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외에 경력 인격적 평가 공인으로서의 사생활 사회경력 등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법원장급 인사 20명에 대한 기본적 자료의 범위는 법원공보, 하급심판례집, 법률신문 등에 실린 판결과 법관경력, 재산등록자료, 일간신문과 법률관련신문의 기사, 논문, 기고문, 인터뷰 기사 등이다. 이 중 판결의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 모든 판결을 참고하였으나, 자료수집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장급 20명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중 1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이영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김진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임명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15일 전에 전혀 없었으므로 준비하는 우리는 다소 당혹스러웠다. 게다가 1월 16일 윤관 대법원장이 송진훈 판사를 김석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하였다. 18일 경 제청할 것으로 예상했던 우리로서는 역시 급작스러웠다. 제청의 과정과 시기 등이 좀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깊이 남는다.

17일 우리는 송진훈 대법관 제청자에 대한 평가의 견서를 국회의장에게 보내었고,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평가의견서도 이날 함께 발표하였다.

사법감시센터에서 내린 평가가 결코 완벽한 것이라

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족함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주요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완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송진훈 대법관과 이영모 헌법재판관에 대한 평가의견서 내용 중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거나 분석내용과 결과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의견은 「사법감시」 다음 호에 게재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는 법조인정보자료실을 통하여 법조인들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해 나갈 것이며 보다 객관적이고 충실한 분석을 위해 풍부한 자료수집과 지표의 개발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법조인정보자료실에 대한 거침없는 의견개진을 바란다. 아울러 법조인정보자료실에 축적될 자료에 대한 협조와 운영과 전산화화를 위한 「솔로몬 통장」에도 많은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한다.

대법관 후보자 평가 기준표

1. 전문법관경력 평가

- 1) 법관 임지 및 담당직무의 특이사항
 - ① 근무지의 지역적 편중성
 - ② 타기관(청와대, 법제처 등) 근무여부
 - ③ 민형사법원 근무문제(특히 서울형사지방법원 근무여부)
- 2) 재판의 임무 수행문제
 - ① 법관과의 경직 수행 여부 및 수행과정
(선관위 외의 정부위원회 등)
 - ② 법원행정 처리 능력 평가 (담당업무/업무수행결과/종합평가)
 - ③ 학문적 이론적 경력 평가
(논문/강의/학위취득/해외유학/연수참가/저작물발간)

2. 판결성향 평가

- 1) 일반 헌법관 2) 신체의 자유 3) 표현의 자유 등 4) 노동권
- 5) 기타 사회권(사회복지) 6) 성차별 7) 기업관계 8) 행정부관계

3. 인격적 평가

- 1) 인격적 결함 여부 — 특정종교·이념 편향문제 등
- 2) 특이성격 소지 여부
 - ① 법정에서의 언동 ② 법원내 인간관계 ③ 재야법조인과의 관계

4. 공인으로서의 사회경력 및 사생활 평가

- 1) 법관의 단체가입 및 활동상황
- 2) 재산등록 및 변동내용과 특이사항
- 3) 기타 공직취임에 문제가 될만한 사생활에서의 문제점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순 서

1.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경력

2. 송진훈 지명자의 판결성향

가. 송진훈 지명자의 일반적 판결성향 평가

나. 송진훈 지명자의 판결성향의 구체적 분석

(1)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일반적 판결성향

(2) 국민의 재판 및 사법절차상의 권리에 관한 판결성향

1) 재판절차에서의 증거해석에 관한 판결성향

2) 사법절차에서의 절차적 권익보장에 관한 판결성향

(3) 행정권과 국민의 생활상의 요구와 관련된 판결성향

(4) 여성의 권리와 가족관계에 관한 판결성향

(5) 기타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사건

3.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사회활동·기타 평가

4. 결론

- 1964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 수료
- 1963 제 16 회 고시사법과 합격
- 1964 군법무관
- 1968 광주지방법원 판사
- 196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 1972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7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
- 1975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77 대구고등법원 판사
- 1979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81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4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장
- 1986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7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대
- 1991~1993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1993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 1996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송진훈

송 지명자는 41년 5월 25일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63년 제16회 고등고시에 합격하였고 군법무관을 거쳐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하였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의 재임 이후

79년부터 2년동안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생활과 84년-86년 울산지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 지역에서 근무한 '대구 경북' 출신의 이른바 '향토법관'이다. 93년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96년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었다.

- 1959 경북고
- 1963 서울대법과대

2.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판결 성향

가.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일반적 판결 성향 평가

송 지명자가 그동안 법관으로서 각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행한 판결은 일반적으로는 무난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판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노력한 판결들이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송 지명자가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 경력법관으로서의 생활을 한 이른바 '향관'으로서 서울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따라서 시대적으로 참여하고 어려운 시국사건을 담당할 기회가 없었던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판결성향의 구체적 분석

(1)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일반적 판결 성향

① 이 가운데 송 지명자가 내린 다음 판결은 당시 일반적으로 권력에 의해 꺾박받고 내몰림을 당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교사들을 보호하면서 사실상 교사들의 단결권과 그들의 활동을 지지한 것으로서 평가 받은 판결이었다.

송 지명자는 1993.2.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전 대구 북중 교사 서수녀씨와 전 대구 성북국교 교사 임성우씨등 공립학교 해직교사 2명이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시교육감은 서씨 등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등이 지난 91년 5월 교사사국선언에서 서명한 뒤 이를 철회하지 않는 등 전교조 활동에 동조하고 학습지도안 제출을 비롯한 학교장의 지시를 여러 차례 어긴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및 성실·복종의무에 위반된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우리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고쳐 민주사회를 세우려는 뜻에서 비롯된만큼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권남용"이라고 밝혔다. (1993.2.25선고 대구고법판결)

그러나 송 지명자가 내린 교육관련 판결 가운데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판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라는 교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이며 상관의 직무상 명령불복종으로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1992.11.12 선고 대구고법 판결)이나 "교사가 학교운영방침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이같은 행위는 비정기전보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1992.6.25자 선고 대구고법 판결)등이 그것이다. 전자의 판결은 근무시간 이전의 근무명령을 인정함으로써 상급자의 전인적 지배를 허용하고 후자의 판결은 학교운영이 교장등 간부들에 의해 일방적이고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당시 현실(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사들도 학교운영과 그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독립된 교육주체로서의 교사의 이익권을 부정한 것으로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② 또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사실상 행정기관에 의해 유리되는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서 송 지명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한 사실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송 지명자는 그동안 이른바 '어용노조'의 위원장이 노조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묵살해도 행정관청이 노조원의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제때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아온 점에 비추어 노동계의 주목을 받은 판결을 한 것이다. 즉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조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했을 때 소집요청 노조원의 대표자 이름으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한 노조 자체규약은 노동조합법에 규정한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송 지명자는 그 판결문에서 "문제의 노동조합법 제26조 3항은 노조대표자가 노조원으로부터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요청을 받고도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 노조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신속하게 회의를 열 수 있게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권을 준 것인지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1992.10.29 선고 대구고법 판결)

(2) 국민의 재판 및 사법절차상의 권리에 관한 판결성향

1) 재판절차에서의 증거해석에 관한 판결성향

송 지명자가 민사 또는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에 관하여 가능하면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음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사사건에서 합의문의 취지를 엄격히 해석한다거나 형사사건에서 증거의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강압수사를 견제하고 그대신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판결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에서 그러한 사례(판결요지)를 몇가지 든다.

① 합의서 작성의 동기 및 경위가 합의와 동시에 합의금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완결하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불과한 경우

“민, 형사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합의서 기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실체상의 권리에 관한 것일 뿐,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제소에 관한 합의로는 해석할 수 없다. (1987.7.8 판결 대구고법 제4민사부 87나130 파기환송)

② 소매치기식 절도범행에 관하여 유일한 증거인 범행목격자의 진술이 경찰 이래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조금씩 반복되어 왔고, 그 진술이 당시의 주변 상황과 제대로 들어맞지 아니하며, 그 진술에 명백히 허위인 것이 포함되어 있고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서 피해 품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면, 목격자의 진술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인이 절도전과 4범으로서 그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소매치기 범행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986.5.28 판결 대구고법 제1형사부 86노263)

③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강간당한 후 즉시 피고인을 유인하여 자신의 거주지 관할 파출소까지 함께 오게 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경우, 그런 정도의 재치가 있는 여자라면 범행현장에 이르기까지의 여러가지 정황등에 비추어 충분히 강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가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1986.6.1 판결 대구고법 제1형사부 85노1059 항소기각)

2) 사법절차에서의 절차적 권익보장에 관한 판결성향
한편 송 지명자는 사법절차과정에서 민원인이나 소송 제기자에게 가능한 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사법적 구제 접근권을 강화하고 종국적으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의존, 법치주의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권자로부터 징계의결을 요구받기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구두로 징계조치사실을 알렸을 뿐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한 바 없고 징계위원회가 아

닌 징계권자의 감독관실 직원에 의하여 확인서와 포기서를 받아 놓고 막바로 징계의결을 하였음은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에 기한 징계처분은 그 절차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판결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였다. (1978.2.14 선고 대구고법 제3민사부 판결, 77구 142호 / 재판장 최재호, 판사 송진훈, 김선옥)

② “피고의 장모를 만나보기 위하여 잠시 피고집에 온 피고의 처제가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사무원이나 고용인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의 동일 세대에 속하는 동거인도 아니므로 그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효력이 없어 이전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였다. (1979.11.28 판결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78나 78호, 취소자판사전 / 재판장 최재호, 판사 송진훈, 김선옥)

(3) 행정권과 국민의 생활상의 요구와 관련된 판결성향

1) 송 지명자는 행정권의 발동과 그로 인하여 국민이 생활상으로 겪게 되는 사건들에 관하여 비교적 넓은 폭으로 국민의 입장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예로 몇가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2인이상의 사망자를 낸 중대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사고당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규정에 의거, 가해자에게 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한 행정처분은 위법이다. … 원고 김씨가 전방주차를 태만히 하고 과속운전을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경운기를 운행하면서 황색신선을 넘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은 무시하고 2명의 사망자를 낸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정, 김씨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다” (1992.8.26자 대구고법 판결)

② “원고 최씨의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음주운전으로 혐의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운전인데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넘은 위법처분이다"
(1992.9.30자 대구고법 판결)

③ 전 한국통신공사 경산전화국장 이수현씨 가족들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지급 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평상시 건강했으나 복무감사 결과 부하들이 경고처분을 받아 충격을 받은데다 전화가입 홍보 및 판매등 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 피로가 누적되어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장의비 지급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1993.1.14자 대구고법 판결)

2) 특히 송 지명자는 집단적 민원성을 갖는 사건등에서도 다수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임대함에 있어 입주자와의 사이에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관리책임을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등의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택공사로서는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아파트 전반에 걸친 수선, 유지, 경비, 공공요금 징수등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그와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공사가 그 수선택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파트 건물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다만 입주자의 특약위반 사실은 과실상계의 요건이 될 뿐이라고 배석판사로 참여, 판결하였다. (1978.2.14 판결 대구고법 제3민사부, 77나 63 취소자판사건 / 재판장 최재호, 판사 송진훈, 김선옥)

(4) 여성의 권리와 가족관계에 관한 판결성향

송 지명자의 판결 가운데 여성의 권익과 가족법에 관련된 판결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 대체로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고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자 한 판결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영리유인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서 사실적 지배의 개념을 넓힌다거나 양육비 협정의 현실적 개정가능성을 언 판결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판결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금 및 양육비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 (1989.7.12 판결 대구고법 특별부 88르 796 취소자판사건)

② 중매결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이미 혼인하여 자식까지 출산한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의 결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혼인 전력을 감추고 농촌이라고 속여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었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그에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돌아가 별거하고 있다면 그들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위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1989.3.29판결 대구고법 특별부 88르413(본심) 항소기각)

③ 호적법상 이른바 창설적 신고인 인지신고(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 포함)등은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반드시 인지자본인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 또는 사자에 의한 제출대행, 우송 등의 방법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므로 인지자 본인의 승락 내지 위탁에 의하여 신고서가 작성되고 사자에 의하여 제출이 대행된 경우에는 위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는 인지자본인의 의사에 합치되어 유효하다. (1989.3.29 판결 대구고법 특별부 88르352 항소기각)

④ 영리유인죄에 있어서 유인이라 함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 관계 혹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바, 피해자가 형식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따라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범인의 기망에 속아간 것이고, 여관에 들어간 뒤에도 창녀로 취업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도망의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해자는 범인들의 사

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보아야 한다. (1987.3.18 판결 대구고법 제1형사부 87노55 파기자판)

(5) 기타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사건

송 지명자는 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벌어지는 전국적인 규모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건을 담당할 기회가 없었던 탓일지도 모르지만 크게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사건을 담당하거나 관련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2년 7월 22일 대구 중구 3선거구의 오남수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국졸의 당선자가 영남 대경영대학원 과정을 거친 것을 마치 정규 영남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위조, 선거물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칙에 벗어난 행위들이 다소 있었으나 고의적인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학력위조 부분도 실제와 다른 표현을 쓴 것이 사실이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내려 원고 측과 그 지지자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대구의 재야법 조계에서도 당시 "당초 학력위조부분을 문제삼아 선거 무효쪽으로 몰고갈 부위였으며 서울의 노원을구 사태의 후유증을 고려, 원고기각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안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도 송 지명자가 어떤 정치적 편견을 보였다거나 어떤 정치세력의 편을 든 특별한 근거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3.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사회활동 · 기타 평가

송 지명자의 특별한 사회적 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법관으로서 보통 겸직하게 되어 있는 공직을 몇차례 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공정선거 확립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직책을 맡고 있던 1994.7.20 당시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태우 후보가 신문에 자신의 저서를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김후보를 선거법위반으로 대구지점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송 지명자의 공명정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은 집권여당 후보의 불법선거활동을 여러 차례 견제했던 사실에서이다. 그 당시 집권여당인

민자당 소속 김시업 대구시의원 사무실의 불에 대하여 대구지점에 수사를 의뢰하는등 비선거관리를 행했다는 노력이었다. 그 당시의 의원은 전화기를 설치해 민자당 정창화후보 설득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버린 사실을 적발, 쇄명령을 내렸으나 김의원의 개입여부등이 는등 조사가 불가능해지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다. 또한 그 당시 민자당 정후보의 벽보를 불법연락업무와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등 정부활동을 지원해 온 대구시 수성구의회의 의원 회거범위반혐의로 대구지점에 고발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송진훈 지명자의 지명에 대해 출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김석수 대법관이 경남출신(경남 하동)임에 비하여 지명되었고 또한 대구 경북지역의 지역색 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부의 국면 모르되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대법관이 그러한 지역안배의 대상일 수에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같은 의사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우리는 일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법률잡지, 판보등 각종 신문,잡지,방송등 자료와 원의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송진훈 대법관 지명 전문법관으로서의 경력, 판결성향, 사회활동 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우리가 완벽하게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의 판결과 사회활동자료를 수집,정리하지는 못하였으나 우리의 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 2년여동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다수재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축적해온 판결등 각종 자료를 평가하건대, 송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별다른 수 없을 정도의 기본권의식, 합리적 판단을 있을 뿐만아니라 개인적 또는 사회적 활동과 다른 물의나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어 이번의 의한 지명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



이영모

지난 1월 15일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영모(헌법재판소 사무처장)씨를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전문성과 인격을 갖춘 인사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그동안 그 후보

가 될만한 법원장, 검사장 이상의 법조인에 대하여 집중적인 판결문, 공소장, 논문, 기고문, 인터뷰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그 결론으로서의 평가가 채 나오기도 전에 이영모씨가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미처 우리의 평가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로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헌법재판관을 위시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이것은 사후적 작업에 불과하나 우리의 검토의견과 평가를 남겨 두는 것이 앞으로의 사법정의를 세우고 사법감시의 전통을 잇는데 중요하다고 보아 그대로 이영모 재판관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영모 재판관의 주요경력사항

- 1956 의령농업고
- 1962 부산대법과대 법학
- 1962 제 13 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62 사법관 시보
- 1963 서울지법 판사
- 1966 서울형사지법 판사
- 1967 서울민사지법 판사
- 1969 서울고등법원 판사직대
- 197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73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74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75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77 서울지법 성동지원 부장판사
- 1979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7~1988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직
- 1988~1991 마산지방법원 원장
- 1991~1992 서울형사지방법원 원장
- 1992~1994 서울고등법원 원장
- 1992~199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1993~199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
- 1993~1994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제 2 분과 위 위원 1994-199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차관급)
- 1994~1997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

2. 관여한 주요재판을 통해본 이영모재판관의 법관으로서의 평가

(1)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장으로 관여

1982년 국가안전기획부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였고, 당시에 이를 안기부 최대의 개가로 자찬하였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집요한 노력에 의하여 송씨 일가 중 일부인사가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사실들이 모두 무죄로 판명나기에 이르렀고, 형량도 처음에는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결국 징역7년6월로 확정되는 등 대부분 공소사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또한 80년대 최대의 법정공방사건으로 기록된다. 피고인들은 1심재판부터 법정에서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최소한 75일에서 116일까지 불법구속된 채 날조된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들에게는 물먹이기, 잠안재우기, 무릎꿇리기, 강제로 술먹이기, 모래주머니로 때리기, 물세례, 손고문,

발고문 등 온갖 고문기술들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들은 그들의 자백이 장기구금과 고문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으며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검사앞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이라고 반복하였다.

항소심판결은 1983. 4. 25.에 내려졌다. 이영모 재판관이 이 때 재판장이었고, 배석은 김창수, 김재진 판사였다.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의 일부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진술과 변론으로 더 이상 공소유지를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주요인이었다. 검찰은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간첩죄를 간첩방조죄로 변경함으로써 스스로 무리한 수사였음을 일부 시인한 셈이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낮아졌다. 사형과 무기징역 형들을 유기형으로 감경시켰다. 이러한 항소심에 대해 이일규 대법원판사(관여법관 전상석, 이성렬, 이회창)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인 검사앞의 자백에 대해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검사앞의 자백은 "부당하게 장기화된 신체구속 후에 또다시 신체상의 고통을 받거나 않을까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 하에서 한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어려운 시대에 고문과 장기구속에 의한 자백을 배척하고, 공안당국의 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 획기적 판결로 정평이 있는 이 대법원 판결은 후일 이일규 대법원장의 임용시 이 대법원장이 대쪽 같은 기개와 인권옹호적 자세를 돋보인 사례로 널리 인용되었다.

이와같은 수석명의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고문당하고 조작당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로 판결한 이영모 이영모 헌법재판관의 책임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당시 재판장으로서 이영모 재판관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얼마나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온가정이 파탄되는 비극을 겪었으며, 안기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피고인들의 진술과 변호인들의 변론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당시 피고인들은 집요한 주장과 확신에 찬 변론을 하였으며 이영모 재판관은 이를 모두 듣고도 그 고문과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샀던 것으로 관련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2) 유서대필 사건시에 서울형사지방법원 원장으로 한 행적

1991년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피고사건이 재판되었다. 이 사건이 공안당국에 의한 또하나의 조작사건이라는 주장이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강하게 제기되어 공방되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고 말았다. 특히 이 사건은 대법원에 까지 강기훈씨의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실정법상으로는 그 유죄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수없이 제기되었다. 재판당시 이미 강기훈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김형영씨의 주장은 과학적 토대없이 육감에 의거한 감정이라는 의문이 또다른 문서 감정 사건으로 김형영 씨가 형사처벌 됨으로써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판 드레퓔스 사건"이라 불렸던 이 사건에 관하여 강기훈씨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인, 관련자들이 그 사건은 조작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지금도 자료집을 만들고 재심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프로그램으로 진상을 파헤치려는 언론의 노력이 있었으나 그 당시 대법원이 압력을 행사하여 방영이 못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서울형사지법 재판부에 계류되었을 때, 이영모 재판관은 서울형사지방법원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의 분리는 독재정권에게 예민한 형사사건에 대해 보다 손쉽게 통제를 하기 위한 권력축의 방안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최근 양 법원의 분리가 철폐된 바 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의 원장으로서 이영모 씨는 유서대필 사건을 포함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형사지방법원장으로서 외풍을 차단하고, 판사들의 소신판결을 격려하였는지 아니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자율성의 보장은 헌법재판관의 필수적 덕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3) 12.12사건 기소유예사건에 관한 현재판단과 관련된 언동

국회 법사위는 1995.1.23 이영모 재판관(당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등 12.12사건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기소를 주장하는 정승화씨 등의 헌법소원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처사" 또는 "국헌을 문란시킨 군사반란 주범들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이영모 재판관은 "하극상의 군사반란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범죄행위로 단죄해야 한다는 측면과 십수년간 국정 of 중추역을 맡아 기성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국민의 손으로 일부 심판을 받았다는 상반된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기소편의주의상 기소여부의 재량을 갖고 있는 검찰이 제반요소를 모두 고려해 내린 불기소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영모 재판관은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사무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 답변하면서 그 결정이 옳았다고 강변한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 12.12사건은 결국 특별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연장된 채 다시 수사, 기소가 되었고 사실상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받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그 결정이 옳다고 발언함으로써 잘못된 검찰의 입장을 결과적으로 대변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폭주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통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그의 발언 중 기소편의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검찰의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제능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것이다.

3. 법원행정의 경험과 능력 및 개인 자질과 인품등에 대한 평가

이영모 재판관은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마산지방법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의 법원장들을 역임하였고 동시에 통상 법관이 겸직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공직자윤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고 능률적인 행정능력을 보였다는 평판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1993.3 당시 택시의 청사안 출입을 일부 허용하는 한편 학생과 일반인들의 단체관람객들에게 법정시설 견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주 목요일 예정된 법원견학 프로그램에 따라 1993.4.15 서초국민학교 6학년생 2백여명을 시작으로 4월 한달동안 3차례 7백여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람객들이 법원 실무 및 시설현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디오상영실을 준비하고 법복, 판결문 등 재판실무와 관련된 서류 및 장비를 전시하는 전시실을 청사안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법원이 보다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개방화함으로써 민주적 사법부로 만드는 데 이영모 재판관이 기여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1993.5.17 이영모 재판관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변호사등 소송관계자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키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실시하였다. 이영모재판관의 명의로 서울변협에 보낸 '변호사 등의 법관면담에 관한 지침'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법관과의 면담이 필요한 변호사나 소송관계자는 사전에 면담신청서에 면담사유 등을 기재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 담당재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당시 전관예우 등과 정치법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이영모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1993.5경부터 이면지에 판결초고문을 작성하도록 해 3천3백만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영모 재판관은 인간적으로 소탈하고 검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등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소문나 있다. 재산등록 당시 이영모재판관은 4억5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내역은 거주하고 있는 34평형의 아파트와 예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4. 이영모재판관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성품 평가

(1) 이영모 재판관이 법원 행정에 있어서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고 또한 특별한 인격적 결함이나 사생활 또는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물의등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어 판결 그 자체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평가가 훨씬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송씨일가 간첩단사건, 유서대필사건, 12.12사건등에서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나타난 이영모 재판관의 언동은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영모 재판관이 관련된 그 사건의 시대상황이 법관으로서 또는 법원행정의 책임자로서 처신하기 어려웠던 시대였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으로서의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 특히 “국가에 의한 범죄”요 “사법부에 의한 범죄적 과오”라고 규정되었던 송씨일가 사건에서 다른 대법관 또는 법관들이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대비되는 이영모재판관의 모습은 분명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용기와 지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정의는 어두운 곳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감히 우리는 대통령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5. 인준청문회 도입없이 국민의 기본권보장 없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제도가 반드시 우리 법제에 도입되어야 함을 부언한다. 우리는 헌법재판관의 임용시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임용시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동의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한

다. 후보자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동의와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 가운데에 자리하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단독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인사청문회의 관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모든 법조인의 능력과 품성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과 지표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솔로몬 통장을 채워주십시오



아이를 제 품에 안고자 하는 어머니의 절규.
왕의 지혜로 제 엄마를 찾은 아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법조인을 원합니다.
법조인자료실은 솔로몬과 같은 법조인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표현입니다.

2,600개의 개별파일과 그 속에 담긴 엄청난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모으고 정리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산화도 해야 합니다.

법조인 정보자료실 파일 하나에 10,000원의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후원하실 파일의 수를 결정하시고,
은행으로 가셔서 입금해 주십시오.
후원자의 이름은 법조인정보자료실에
꼭게 새겨질 것입니다.

• 「솔로몬 통장」 국민은행 : 015-21-0808-184
• 예금주: 문혜진